

책갈피기호( ) 숨기기  
단락주로 변경하기

## 國家間知的所有權紛爭의 解決에 관한 條約(案)에 관한 검토

---

저자: 丁相朝  
발행년도: 1994

문헌: 著作權  
권호: 제26호 (1994년)  
출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30] \_ 편집자주

\_ UR협상이 타결되고 WTO하의 분쟁해결절차도 개선되었으며, WIPO주도하의 지적소유권 분쟁해결조약 태동을 위한 전문가위원회가 6차례 개최된 시점에서 「A Treaty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State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에 관한 소개를 기획했다.  
\_ 앞에 실린 논문에는 전반적인 소개가 실려 있고 뒤에는 조약안의 번역을 실었다.

### I. 知所權 紛爭解決에 관한 專門家會議

\_ 지적소유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심각한 분쟁의 대상이 된 것은 최근들어 技術集約型 産業 또는 革新主導型 産業의 중요성이 커지고 동시에 지적소유권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서 야기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를 주도해 온 미국이 자국의 기술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를 통상외교의 중요한 이슈로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가간 지적소유권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마련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_ 이제까지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를 중심으로 한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가 실효성이 없지 않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특히 지적소유권 보호의 강화를 위한 파리협약이나 베른협약의 개정에 있어서 소위 남북대립의 문제로 인하여 시간의 낭비만이 있고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됨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국제 통상제도로서의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T)"과 동일한 제도에 의하여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로서 "GATT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通商問題로서의 知的所有權에 관한 協定"이 마련되어 국제적인 수준의 지적소유권 보호 강화가 모색되고 있고, 특히 의무위반 또는 국가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이고 신속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정집행의 실효성 확보에 많은 관심이 기울

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UR협상에서 지적소유권보호[31]에 관한 국제규범을 준비하고 지적소유권 분쟁을 통상분쟁의 하나로 GATT분쟁해결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WIPO의 지적소유권보호와 중복적인 작업이고 GATT체제내에서의 지적소유권 보호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비롯한 WIPO중심의 기존 국제규범의 기본원칙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 신중한 비판이 유럽 각국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UR협정의 지적소유권관련(UR/TRIPs) 규정도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분쟁해결에 있어서 위반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 등의 제재를 허용하고 있고 그러한 무역보복조치가 위반국의 국민에 대한 내국민대우 원칙의 배제와 상호주의로의 복귀를 포함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GATT체제 내에서의 지식권 보호는 WIPO중심의 기존 국제규범의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는 내국민대우 원칙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하는 신중한 비판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 知的所有權 문제가 심각한 國家間 紛爭의 대상으로 등장하여, 미국 등의 선진외국은 지적소유권 문제를 通商問題로 파악하여 최근에 타결된 UR협상과 북미에서 발효된 NAFTA협정에 상세한 實體法的 規정을 두고 그에 관련된 국가간 분쟁의 해결을 위한 節次法的 規정도 마련해 두고 있는 실정인 바, GATT체제 내에서의 지적소유권 문제의 해결은 기존의 WIPO중심의 知的所有權 保護秩序에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비판적인 의견과 함께,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는 UN의 전문기구의 하나로서 국가간 지적소유권관련 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약의 체결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왔다. WIPO는 국가간 지적소유권관련 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약의 체결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國家間 知的所有權 紛爭의 解決에 관한 專門家委員會(a Committee of Experts on the Settl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between States)" (이하에서는 전문가위원회라고 약칭함)를 구성하여 1990년 2월에 제1차 전문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이래 1994년 2월까지 6회에 걸친 전문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필자는 제6차 전문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바 있어서, 본고에서 동 전문가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마련된 "國家間知的所有權紛爭의解決에 관한條約(案)"(Treaty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State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의 개괄적 고찰과 문제점 지적을 해보고자 한다.

## II. WIPO知所權紛爭解決條約의 기능적 의미

— 지적소유권에 관한 상세한 규정과 함께 UR협상이 타결되었고 GATT 또는 世界貿易機構(World Trade Organization : WTO)하의 분쟁해결절차가 개선된 현시점에서 WIPO知所權紛爭解決條約의 의미와 중요성 및 WIPO전문가위원회 회의에의 참석의 필요성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WTO분쟁해결절차는 調査委員會節次(panel procedure)에서의 지연방지 및 司法的解決방법으로서의 성격 강화라는 특징과 함께 "통상문제로서의 지적소유권(TRIPs)"에 관한 UR협정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WIPO知所權紛爭解決條約과 유사한 특징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일응 보여지나, WTO분쟁해결절차와 WIPO知所權紛爭解決條約을 자세히 비교해보면 아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보[32] 복조치의 가능 여부, 上訴기구의 존부, UR/TRIPs에서 인정된 non-violation complaints에 대한 5년간의 예외 등의 커다란 차이가 있음이 발견된다.

— 상기와 같은 양자의 차이점이 나오게 된 이유로는, WTO분쟁해결절차는 지적소유권 뿐만 아니라 서비스, 반덤핑, 보조금 등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까지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데 반하여 WIPO知所權紛爭解決條約은 지적소유권 분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별히 마련된 분

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있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이러한 차이점으로부터 바로 WIPO知所權紛爭解決條約의 기능적 의미와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WTO분쟁해결절차와 WIPO知所權紛爭解決條約은 그 대상 분쟁의 범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 WTO분쟁해결절차는 UR/TRIPs에 관한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기존의 지적소유권 보호수준보다 높은 규범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WIPO知所權紛爭解決條約은 지적소유권에 관한 모든 WIPO관장 多者條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체약국이 합의에 의하여 기타의 지적소유권 관련 조약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상 분쟁의 범위가 훨씬 더 넓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중대한 차이점으로부터 WIPO知所權紛爭解決條約의 의미와 중요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 III. WIPO知所權紛爭解決條約(案)의 개괄적 고찰

\_ 전문가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 마련된 WIPO知所權紛爭解決條約(案)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여 선택하여야 하겠지만, 특히 아래와 같이 ① 條約案의 적용범위 즉 條約案의 대상 분쟁의 근원이 되는 根據條約(source treaty)의 범위, ② WTO紛爭解決節次와의 選擇的 이용 여부, ③ 조약안의 분쟁해결절차하에서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의 일방적 제재가 여전히 가능할 것인가, ④ 조사위원 (PANELIST)의 독립성 유지 방안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간략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 1. 조약안의 적용범위

\_ 條約案의 적용범위 즉 條約案의 대상 분쟁의 근원이 되는 根據條約(source treaty)의 범위에 관하여, WIPO條約案은 지적소유권 분야의 모든 多者條約(multilateral treaty)으로 널리 적용범위를 인정하는 방안과 WIPO에 의하여 운영되는 다자조약에 한정하는 방안 등의 3가지 가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바, WIPO條約案이 중요한 분쟁해결규범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적소유권 분야의 모든 다자조약에 관한 분쟁을 모두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WIPO條約案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널리 지적소유권에 관한 모든 다자조약이라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한 다자조약의 범위에 최근 타결된 UR협상의 결과 마련된 WTO협정에 포함된 지적소유권 규정(TRIPs)도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분쟁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라서는 WTO협정의 지적소유권에 관한 분쟁도 WTO분쟁해결절차가 아니라 WIPO지소권분쟁해결절차에 의하여 해결될 수도 있고, 특히 WIPO가 이제까지 지적소유권에 관한 UN전문[33] 기구로서 상당한 전문지식과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래의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_ WIPO條約案도 본래 그 적용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根據條約하의 지적소유권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근거조약이 WIPO條約案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거나, 분쟁당사국들의 합의에 의하여 WIPO條約案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분쟁해결을 할 수도 있음을 규정하면서, 그러한 경우에 분쟁당사국들이 모두 WIPO지소권분쟁해결조약의 체약국이 어야 하는지 아니면 분쟁당사국들의 어느 하나의 국가만이라고 체약국이면 족한 것인지에 대하여 두가지 가안을 마련해 두고 있는 바, WIPO條約案이 중요한 분쟁해결규범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분쟁당사국의 일방이 체약국이면 WIPO條約案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_ 그러나, WIPO조약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자조약의 범위에 관해서 선진국들은 WIPO관

할하의 다자조약 또는 WIPO와의 공동으로 관할되는 다자조약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지적소유권 관련 모든 다자조약을 포함하는 것을 하는 조약안은 개발도상국들에 의한 지지를 받고 있는 실정인 바, 우리나라는 조약안의 적용범위를 명백히 하고 선진국들과 입장은 같이 한다는 맥락에서 'WIPO관할 또는 WIPO와의 공동으로 관할되는 지적소유권 관련 다자조약'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2. WIPO와 WTO 紛爭解決節次의 選擇的 이용?

\_ WIPO와 WTO 紛爭解決節次의 상호관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협정(UR/TRIPs)에 관한 분쟁이 GATT분쟁해결절차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지적소유권 분쟁이 WIPO절차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더구나 GATT절차는 WIPO절차와는 달리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조약위반국에 대한 제재로서 보복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Panel Report가 채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 점이 WIPO절차와의 커다란 차이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 등의 선진국은 WIPO절차보다는 GATT절차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_ 그러나, 상당부분의 근거조약이 WIPO관장조약과 동시에 UR/TRIPs로 경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WIPO분쟁해결절차가 이용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특히 UR/TRIPs에서 포함되어 있지 못한 분야(예컨대, 출원, 심사 등 절차적 사항)에 관한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WIPO분쟁해결절차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WIPO 특허법 및 상표법 통일화 조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도 WIPO조약에 의할 것임은 물론인 것이다. 더우기, UR/TRIPs에 관한 분쟁의 경우에도 분쟁 당사국들의 합의에 의하여 GATT절차이외의 절차에 의하여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러한 한도에서 WIPO분쟁해결절차가 이[34] 용될 가능성은 상당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히 WIPO가 이제까지 지적소유권에 관한 UN전문기구로서 상당한 전문지식과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래의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WIPO절차와 GATT절차의 상호관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되어, 가까운 장래에 제7차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도록 하였다.

## 3. 분쟁 해결 방법

\_ 지적소유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조약안은 協議, 주선, 조정, 중개, 조사위원회절차(Panel Procedure)등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당사국 사이의 협의라고 하는 분쟁해결절차는 조약안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 가운데 첫 번째로 거쳐야 할 절차로서, 제3자의 개입없이 분쟁당사국 사이의 우호적인 협의와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다. 그러나, 분쟁당사국 사이의 협회가 언제나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는 아니다. (i) 분쟁당사국들이 특정 분쟁에 관하여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ii) 분쟁당사국들이 협의 대신에 주선, 조정, 중개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또는 (iii) 개발도상국인 분쟁당사국이 협의 대신에 주선, 조정, 중개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외에는 조사위원회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 제1차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의 하나가 바로 협의절차인 것이다. 이러한 협의절차는 직접적인 분쟁해결에 실패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분쟁에 관련된 논점들과 분쟁의 성격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한 절차임에 분명하다. 협의절차에 있어서 분쟁당사국들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으로 기대되고 더 나아가 조약안은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의 완료를 위한 時限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조약안 제6조 제1항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분쟁당사국 일방이 조사위원회절차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상의 협의시한이 지나면 협의절차를 거절하고 조사위원회절차에 호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와같이 협의에 사실상의 시한을 규정해둔 것이 기존의 통상분쟁해결절차와는 상이한 특징을 이룬다고 보여진다.

\_ 조약안은 제3자의 개입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의 하나로서 周旋·調停·仲介를 규정하고 있다. 주선, 조정, 중개에 관한 정의규정은 없지만, 이러한 분쟁해결방법들의 공통된 특징은 전술한 협의 절차와는 달리 제3자의 개입 또는 도움으로 분쟁의 객관적이고 타당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다만, 제3자의 결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오직 분쟁당사국들이 서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것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해결방법은, 개발도상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당사국들이 그러한 분쟁해결방법에 의존하기로 상호합의를 하여야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분쟁당사국들의 합의는 필연적으로 분쟁대상인 의무위반내용과 개입하게 될 제3자에 관한 합의를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35]

\_ 마지막으로 분쟁해결방법가운데, 분쟁의 심리와 분쟁당사국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調査委員會節次(Panel Procedure)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은 조약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특기할 사항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총회나 기타 기관의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사위원회의 구성이 자동적이라는 점이다. 조사위원회의 자동적 구성은 다른 조약에서의 분쟁해결방식과는 다른 것이다. 예컨대,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소유권조약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내용의 총회 결정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통일을 위한 條約案은 WIPO총장이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들을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ATT의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는 각각의 조사위원회가 분쟁당사국들의 합의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쟁해결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다.

\_ 그러나 조약안도 조사위원회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다. 즉, 분쟁당사국들은 협의나 주선, 조정, 중개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조사위원회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분쟁당사국 일방의 비협조 등에 의한 분쟁해결의 부당한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조약안은 일정한 시한이 경과하면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시한이 경과한 후에는 분쟁당사국이 조사위원회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시 말해서,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時限 또는 분쟁당사국간에 별도로 합의된 時限 내에 협의 요청에 대한 상대방 분쟁당사국의 답변이 없거나, 그러한 시한 내에 협의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시한 내에 분쟁당사국들이 협의 개시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분쟁당사국들이 제4조에 규정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분쟁당사국이 조사위원회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협의 또는 주선, 조정, 중개 절차가 개시되었지만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쟁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분쟁해결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쟁당사국은 조사위원회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_ 조사위원회 절차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위원회의 구성일 것이다. 조사위원회의 구

성은 매 분쟁마다 개별적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특정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대부분의 경우에 어느 다른 조사위원회의 구성과도 다르다. 그리고, 총회는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후보들의 명부를 만드는 바, 구체적으로 누가 조사위원후보를 추천하여 후보명부에 등재될 수 있고 조사위원 후보의 자격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서는 규칙(Regulations)에 의하여 정한다. 이러한 조사위원후보 명부는 수시로 개정된다. 분쟁당사국들의 공동의 합의에 의하여 지명되는 조사위원이 아닌한, 조사위원들은 그러한 조사위원후보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조사위원후보 가운데에서 지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_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조사위원의 수는 3인 이상 5인이하이다. 조사위원회절차 신청서 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또는 별도로 분쟁당사국들에 의하여 합의된 시한 내에, 조사위원의 수에 대하여 분쟁당사국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3인으로 한다. 조사위원의 지명에 있어서도, 2개월 또는 합의된 시한 이내에 분쟁당사[36] 국들에 의하여 지명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의해서가 아니라 WIPO총장에 의하여 지명된다. 총회에 의하여 조사위원을 지명하도록 하는 것은 보다 많은 비용 (참석대표들의 여행비용과 총회소집을 통지하는 비용 등)과 시간 (총회소집에 소요되는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조약안은 WIPO총장으로 하여금 조사위원들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점에서, 체약국들이 조사위원들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약상 분쟁해결방식과는 달리, 조약안은 WIPO총장으로 하여금 조사위원들을 지명하도록 함으로써 분쟁당사국들에 의한 분쟁해결의 지연이나 방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정들은 결과적으로 조사위원(PANELIST)의 독립성 또는 분쟁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_ 조사위원회는 그 직무로서 분쟁을 審理하고, 지적소유권에 관한 의무 위반 여부와 그 법적 근거에 관한 조사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한 조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분쟁당사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勸告를 내용으로 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약안은 조사위원회 권고의 내용에 일정한 제한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즉, 분쟁당사국의 요구가 없는 한, 조사위원회는 특정 분쟁당사국이 자신의 국내법을 어떻게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권고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제한은 제4차 전문가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의무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는 체약국의 국내법문제이기 때문에 조사위원회에서 구체적 조치까지 권고해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러한 의견이 반영된 제한인 것이다. 그리고 조사위원회절차에도 일정한 시한이 있는 바, 조사위원회 제1회 회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또는 당해 회의일 [또는 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으로서 분쟁당사국들의 협의를 거쳐서 조사위원회가 결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위원회절차를 종결하고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하며 당해 보고서를 WIPO총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 4. WTO분쟁해결절차와의 차이점

\_ UR협정은 분쟁해결절차에 관해서도 기존의 GATT분쟁해결절차를 보다 사법적 절차로 승화시키기 위한 상세한 규정들을 마련해 두고 있어서 그러한 규정들이 WIPO분쟁해결조약안의 절차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UR협정의 협의절차에 의하면, GATT 제22조 또는 제23조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에, 상이한 합의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협의요청에 응하고 30일 이내에 협의에 임해야 한다. 시한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위원회 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의 GATT분쟁해결절차와는 달리 UR협정의 협의절차는 지연방지와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서 조약안의 협의절차와 구체적 시한의 차이는 있지만, 지연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시한을 정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 그러나, UR협정의 調査委員會節次와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UR협정은 GATT협정과는 달리 조사위원회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UR협정은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37] 도, 지연방지를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분쟁당사국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사무총장이 일방체약국의 요청에 따라서 조사위원을 지명함으로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종보고서의 채택에 있어서도,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위임사항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고 있다. 더우기 UR협정에 의하면, 최종보고서에 불복하는 분쟁당사국은 보고서의 법률문제에 한하여 상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최종보고서 권고내용의 이행여부에 관한 감시 등의 상세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더우기 UR협정의 조사위원회 절차는 조사위원회의 권고내용 가운데 구체적인 시정조치에 관한 권고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용 하고있고, 그러한 권고를 분쟁당사국이 이행하도록 이해의 확보를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에 의해서 분쟁당사국의 권고내용의 이행을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권고내용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손해배상, 협정상의 특혜 등의 정지, 기타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 UR협정의 조사위원회 절차는, 외교적 분쟁해결(power-oriented)으로서의 성격을 상당히 버리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WIPO조약안의 분쟁해결절차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司法的 解決(rule-oriented)을 하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UR협정에서처럼 보복절차를 허용하는 그러한 분쟁해결절차는 오히려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또 다른 기본원칙으로서의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반하고 상호주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즉, 조약위반국(A국)이 보복하고자 하는 국가(B국)의 국민에 대하여 지소권보호를 거절한 것과 동일한 정도로 B국은 A국 국민에 대한 지소권보호를 거절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고, 이러한 보복조치는 WIPO중심의 국제규범의 근본원칙으로 되어 있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본래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의하면 A국으로 하여금 조약위반에 해당되는 국내법제도를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변론으로 하고 A국의 보호수준이 낮다고 해서 B국이 A국 국민에 대해서는 내국민과 달리 차별하여 A국에서와 동일한 보호만을 해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GATT체제내에서의 보복조치가 상호주의로의 복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WIPO 중심의 국제규범의 근본원칙의 하나로 되어 있는 내국민대우의 원칙과 상충될 수 있는 위험은 있다고 보는 문제점 지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 多者體制의 강화

— UR협정의 또다른 특징의 하나는, 분쟁해결을 위한 多者體制(multilateral system)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약국들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GATT와 UR협정의 분쟁해결절차를 준수하고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다자체제의 강화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삽입된 것은, UR협상에서의 논의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의한 일방적 조치와 같이 GATT에 위반되는 일방적 분쟁해결절차를 억제하고 다자간 분쟁해결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미국 통상법 제 301조[38] 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주목해야 할 규정일 것이다. 조약안에서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만한 규정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미국이 계속하여 자국의

통상법 제301조가 GATT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그러한 다자체제의 강화를 위한 별도의 규정도 그 의미가 반감될 것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 IV. 평가 및 향후 대책

\_ 제6차 전문가회의에 관련부처의 담당공무원과 함께 학계 등의 전문인력이 자문의 자격으로 동참하게 된 것은, 정부로서는 전문인력의 자문을 받아서 보다 완벽한 전략을 모색할 수 있고 동참하게된 전문인력으로서도 실무적인 차원의 문제점을 직접 경험하게 되어서 보다 현실성 있고 수준높은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_ 문제점으로는, 금번 전문가회의가 제6차회의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을 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었고 기존의 조약안에 관한 조문별 검토에 있어서 문구를 수정하는 작업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바, 보다 효율적이고 완벽한 준비와 대응을 위해서는 목표가 되는 전문가위원회(Target Committee)의 제1차회의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예컨대, 미국과의 통상분쟁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다자체제(multilateral system)에 의한 분쟁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고, 이미 UR에서 분쟁해결에 관한 Understanding은 다자체제의 강화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로서는 다자체제의 존중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삽입하도록 제안할 필요가 있었지만, 제6차회의에서는 조약안에 관한 검토를 마치고 조약체결을 위한 외교회의의 전단계이어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포기해야만 했다.

\_ 전문가회의에 참석한 우리나라 대표들은 회의진행상황에 따라 최선의 대응을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미국·독일·일본·영국 등 대표의 활동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대표는 적극적이고 정곡을 찌르는 정확한 의견개진이 부족한 형편이었던 바,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대표는 제1차 전문가회의에서부터 금번의 제6차회의에 이르기까지 구성인원이 동일하지 못하고 교체되어서 전문가회의가 진행되어온 경과 및 전문가회의의 구체적 토론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_ 전문가회의 등에 파견되는 인력의 전문화 및 제1차회의에서부터의 지속적인 참여와 동시에 요구되는 향후대책으로는, 국가간 지적소유권 분쟁의 예방을 위한 국내법 및 국내 행정과 사법적인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국내법 정비는 UR/TRIPs에의 대비로서 필요한 작업이기도 한 것인 바,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국내 지적소유권법의 마련 그리고 국내 산업현황과 조화될 수 있는 법제도의 모색을 위하여 신중하고 깊이있는 연구가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특히, WIPO전문가회의 등에 특허청 공무원이 주로 파견되어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나, UR/TRIPs 등에서 요구되는 상당부분의 법제도 개정은 저작권법에 대한 것이고 따라서 문화체육부의 관련 국 또는 과의 담당공무원이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39] 적인 연구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UR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로서는 저작권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국제조약의 하나인 베른협약에의 가입이 시간문제에 불과한 것인 바, 베른협약에의 위반여부가 문제될 여러가지 논점들과 국내법 규정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만 지적소유권에 관한 국가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